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양승이 의원 대표발의】



2023. 3. 27.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13호로 2023년 3월 16일 양송이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3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청소년, 유아 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공영 노외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의 지정 등(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3.3.13.~3.18.)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 노외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구민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에서 구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에 “영등포구 관내 공영 노외주차장”을 신설함.

○ 검토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조례로써 다수인이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지침인 「2022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 지침」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금연구역 지정 여부와 관련하여 가급적 조례로 지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기술되어 있어 상위법령이나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의 건강권 및 흡연권 보장의 측면에서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 고 자 료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